

우리 나라 租稅制度의 所得再分配 效果⁽¹⁾

李俊求·李常英

우리 나라 조세제도의 부담분배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조세부담의 누진성이 점차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여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과연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그 결론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그 출발점을 찾고 있다. 기존 연구가 갖는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가 부담분배의 측면에서 갖고 있는 성격을 분석하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안점이다. 본 연구는 대우경제 연구소에서 수집한 『1993년도 한국가구 패널조사』의 통계자료를 분석의 기초로 삼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이를 갖고 있다. 이 자료는 전국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조사한 미시자료라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가 기초하고 있는 자료들에 비해 상대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명백히 고려에 넣었다는 점에서도 기존의 연구와 큰 차이를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 탈세가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도 기존의 연구들은 이를 전혀 고려에 넣지 않았고, 그 결과 우리 나라 조세제도가 갖는 부담분배의 누진성을 과장해서 평가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실제의 부담분배가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보다 훨씬 더 역진적이라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1. 머리말

우리 나라의 租稅制度는 負擔의 공평한 분배라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는 그간 몇 번에 걸친 조세제도 개편을 통해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했으나 눈에 띄 만한 개선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채로 남아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는 지난 2, 30년 동안의 불균형성장과정의 결과로서 나타난 所得과 富의 不公平한 分配 때문에 심한 몸살을 앓아온 터였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단지 소득과 부가 편중되어 있다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분배와 관련된 正義의 基盤 그 자체가 취약하다는 본질적인 측면에 까지 걸쳐있기 때문에 한층 더 큰 심각성을 띠고 있다. 이와 같은 분배의 상황 때문에 조세제도의 再分配機能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의 조세제도는 납세자들의 경제적 능력에 걸맞는 부담의 분배조차 제대로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

(1) 이 연구는 재단법인 수암장학문화재단의 연구비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나온 연구들을 보면, 우리 나라 조세제도의 부담분배는 그 逆進的 性格이 차츰 심화되면서 소득계층별 부담분포가 U자형의 모양을 갖는 구조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다시 말해 中間소득계층의 조세부담이 비교적 가볍고, 高소득층과 低소득층에게는 이들보다 어느 정도 더 무거운 조세부담이 돌아가는 구조로 서서히 부담분배의 틀이 잡혀져 왔다는 견해가 지배적임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은 견해는 Heller(1981), 한승수(1982), 이재은(1984), 이계식·배준호(1986), Bahl *et al.* (1986), 심상달(1988) 등 조세부담의 분배문제와 관련하여 그 동안에 행해진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이 연구자들은 所得稅制가 갖는 미약한 누진성에 間接稅制의 역진성이 겹쳐지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한다. 이들에 의하면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 조세제도의 부담분배는 미약하나마 어느 정도의 누진성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이 기본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로서 그들은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에 걸쳐 행해진 대폭적인 間接稅制 改編을 들고 있다. 즉 간접세제 개편의 결과 전제 조세수입 중 간접세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부담분배의 역진성이 점차 심화되는 결과가 빚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간접세를 통한 역진성이 조금씩 누적된 결과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상당히 뚜렷한 U자형 구조로 정착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해석이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소득분배나 조세부담 분포에 대한 연구는 근래에 들면서 이 U자형 구조가 해체되어 가고 있다는 시사를 던지고 있어 우리의 관심을 끈다. 그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조세부담의 누진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U자형 구조가 해체되어 간다는 연구결과다. 이러한 결과는 대표적으로 成明宰(1993), 羅城麟·玄鎮權(1993b)의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들은 所得稅制의 누진성이 종전에 비해 강해진 데다 소득계층별 消費行態에도 변화가 생긴 데 그 주요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그간의 지속적인 稅制改編의 결과 소득세제가 상당히 높은 누진성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여전의 변화로 말미암아 간접세제의 역진적인 성격도 어느 정도 약화되어 전반적으로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완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들은 油類, 승용차와 관련된 特別消費稅制가 비교적 강한 누진성을 갖고 있어 간접세의 역진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더러, 고소득계층에 속해있는 가계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상품의 소비를 상대적으로 크게 늘려 간접세의 역진성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

타났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런데 이 연구들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어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결론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게 만든다. 무엇보다도 우선 이들이 사용한『都市家計年報』자료는 소득분포의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을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2),(3)} 이렇게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가난한 일부의 가계가 제외되면 통계자료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평균적 消費性向이 歪曲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가장 가난한 가계를 빼고 低所得層을 정의하여 이들의 평균적 소비성향을 재면 현실의 저소득층이 갖는 소비성향보다 더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가난한 가계일수록 더 높은 소비성향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인데, 이렇게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과소평가된다면 그들이 지는 간접세 부담 역시 과소평가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반면에 매우 부유한 소수의 가계를 빼고 高所得層을 정의하여 이들의 평균적 소비성향을 재면 현실의 고소득층이 갖는 소비성향보다 더 큰 것으로 파악되어 고소득층이 지는 간접세 부담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생긴다.

또한 나성린·현진권의 연구는 소득세의 부담분배를 추정하면서 脱稅(tax evasion)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탈세가 광범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고소득층일수록 그 경향이 심하리라는 것은 거의 상식에 가까운 사실이다. 중·저소득층의 소득은 주로 勤勞所得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源泉課稅가 됨으로 말미암아 탈루가 매우 어렵게 되어있다. 반면에 고소득층이 얻는 소득의 경우에는 非근로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감추기가 매우 쉽고 실제로 상당한 정도로 탈루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사회에서 租稅制度 改革의 당위성이 제기될 때마다 언제나 논의되면서 그렇다고 뾰족한 해결책도 찾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고소득계층의 탈세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세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조세부담의 분배상태를 분석한다면 당연히 누진성이 過大評價되어 나올 수밖에 없다.

한편 所得分配와 관련한 최근의 동향을 보면, 조세부담의 누진성이 커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오히려 더욱 역진적이 되어가는 방향으로 U자형 구조가 해체되어왔을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도 있다. 그와 같은 가능성은 근래 우리 사회에 대량의 자본이득이 발생한

(2) 더군다나 이 자료에는 1인가구가 완전히 제외되어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매우 가난한 계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3) 이 자료가 현실의 분배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자료에 의거하여 계산한 1991년도의 지니계수가 0.27밖에 안된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에 관한 연구에서 이처럼 낮은 지니계수를 얻은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가장 최근에 나온 안국신(1995)의 연구를 보면 1992년도 지니계수가 0.3884로 구해져 있어 0.27이라는 값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바 있고 이로 말미암아 한층 더 많은 소득이 고소득층으로 분배되는 결과가 빚어졌다는 사실에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걸쳐 발생한 대규모의 資本利得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인식한다.⁽⁴⁾ 고소득층은 이렇게 많은 자본이득을 통해 갑자기 더 큰 富를 누리게 되었지만 그들이 이와 관련해 져야했던 추가적인 조세부담은 지극히 미미한 것이었다. 우리 나라의 조세제도에서는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을 과세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 주고 있다. 또한 부동산의 讓渡差益에 과세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과세대상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한층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U자형구조가 해체되어 왔을 것이라는 추정은 바로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80년대 후반 이후 나타난 消費 패턴상의 변화에서 조세부담의 분배가 종전보다 더욱 역진적으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할 또 하나의 근거를 찾게 된다. 우리 사회에는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걸쳐 저소득층의 내구소비재 구입이 급증하고, 外食 및 家事勞動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는 등 소비가 다양화된 반면 고소득층의 소비증가 추세는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소비패턴상의 변화는 간접세 부담의 역진성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 왔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日本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역진성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U자형 구조가 해체되는 결과가 빚어졌다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어 우리의 관심을 끈다.⁽⁵⁾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일본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연구가 아직 나와있지 않으나 비슷한 현상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는 짐작은 해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최근에 행해진 조세부담 분배에 관한 연구 중 간접세의 역진성이 완화되었다거나 직접세의 누진성이 높아졌다라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 연구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그 결론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가 갖는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視角에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가 부담분배의 측면에서 갖고 있는 성격을 분석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데, 논문의 전반적 구성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선 다음 절에서는 분석의 기초가 되는 資料, 推計節次, 그리고 歸着假定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연구의 방법에 대해 설명하게 된다. 제3절에서 표본자료를 母集團化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후, 제4절에서는 脫漏所得을 추계하여 통

(4) 예를 들어 이정우(1991)의 연구는 1980년대 말경에 발생한 대규모의 자본이득이 소득과 부의 편중을 한층 더 심화하는 결과를 가져 왔음에 주목하고 있다.

(5) 일본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가 행해진 예로는 石弘光(1979), 林宣嗣(1987) 등이 있다.

계자료를 보완하는 작업에 대해 논의하려 한다. 제5절은 우리 나라 조세제도의 부담분배에 대한 實證分析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는데, 이 논문의 실질적인 결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절에서는 본론에서의 논의를 요약하고 분석결과의 함의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2. 研究의 方法

본 논문은 전국 단위의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10분위별 조세부담 분포를 추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분석의 기초자료로서는 大宇經濟研究所에서 수집, 발표한 『1993년도 한국가구패널조사』(이하 KHPs) 통계자료를 사용한다. 이 자료는 개별가계 4,547가구와 개인 10,460명을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1992년의 소득 및 소비 내용을 대상으로 하되 실제 조사는 1993년에 실시되었다. 이 자료는 전국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조사한 微視資料라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가 기초하고 있는 자료들에 비해 상대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들은 대부분 정부가 발표한 거시통계자료로서, 조사항목도 우리의 관심대상이 되는 자산-소득-소비 중 하나 혹은 두 가지 항목만에 국한되어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간혹 『都市家計年報』 원자료 같은 미시자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역시 조사대상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근로자가구와 비농가가구로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게다가 자산 항목에 대한 조사가 빠져 있어 조세부담 분배에 관한 분석의 기초자료로 삼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KHPs자료를 제외하면 가계의 자산-소득-소비 전 항목에 대해 조사된 미시자료로서는 韓國開發研究院(KDI)의 설문조사자료인 『國民意識調查』(1989)가 거의 유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KDI자료는 消費項目의 조사가 세부 지출항목이 아니라 몇 개 큰 범주의 지출 항목만에 대해 조사되어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자료에 의존하여 간접세의 부담분배를 분석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이에 비해 KHPs자료는 非내구재의 경우에는 비슷한 한계를 갖고 있으나, 주요한 간접세 부과대상인 내구소비재 품목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가지고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 KHPs자료를 조세의 부담분포를 분석하는 기초자료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장점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6)

(6) 사실 KHPs자료는 조사대상이 되는 소비항목의 수가 『都市家計年報』의 경우보다 훨씬 적다. 그러나 다행히 주요한 과세대상품목을 거의 포함하고 있어 분석에 특별한 어려움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우리 나라 조세의 所得再分配效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조세의 부담이 소득계 층별로 어떻게 분배되는가를 알아내야 한다. 조세부담의 轉嫁로 말미암아 稅法상의 부담 주체와 실제의 부담주체가 다른 것은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간접세는 물론 직접세의 경우에도 조세부담의 전가는 자주 일어나고 있다. 만약 우리가 각 조세별로 그 정확한 負擔歸着의 상황을 알고 있다면 그 지식에 입각하여 소득계층별 부담분배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부담의 전가와 귀착에 관한 실증연구가 수적으로도 충분치 않은 데다가 연구결과가 서로 달라 이렇다할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미국등 선진 국의 경우에도 상황이 이런 바에야 우리 나라처럼 모든 측면에서 연구결과의 축적이 없는 경우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따라서 각 조세의 負擔이 결국 누구에게 귀착되는가를 알아내는 문제는 대부분 인위적인 假定에 의존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Pechman and Okner(1974)나 Pechman(1985)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 미국경제를 대상으로 행해진 조세부담 분배의 분석에서도 귀착가정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이 점이 본 논문뿐 아니라 대부분의 조세 부담 분배에 관한 연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다. 비판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분석의 결과라고 내놓은 것이 사실은 가정의 소산에 지나지 않는다고 치부해 버릴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석결과도 이와 같은 기본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 강조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려의 대상이 되는 여러 종류의 직접세 중 所得稅의 부담이 각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추정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일이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그 성격상 부담의 전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의 납부자를 바로 최종부담자로 간주하면 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시자료는 소득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개인 身上情報를 구체적으로 제공해주고 있어 각 개인이 내야할 소득세액을 직접 산출할 수 있다. 즉 각 개인별로 주어진 소득, 가족관계, 직업, 각종 경비지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얼마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결국 얼마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바로 계산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個人的 特性을 정확히 반영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해내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납부하는 소득세액과 일치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만약 소득이 원천적으로 탈루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실제로 내는 소득세액은 이렇게 계산된 금액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勤勞所得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의 脫漏가 그다지 심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事業所得의 경우에는 대규모로 소득의 탈루가 이루어지고 있으리라

고 믿을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 사업소득의 탈루 가능성을 반영하여 소득세의 부담분배를 추정하지 않는 한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間接稅의 경우에는 그 부담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각 소득계층이 과세대상이 되는 품목들을 어느 수준으로 소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그 소득계층이 지게되는 간접세 부담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 결국 간접세 부담의 분배상태를 추정하는 데는 각 소득계층의 消費支出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KHPs자료에는 대부분의 소비 항목에 걸쳐 지출내용이 자세히 조사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각 소득계층별 간접세 부담규모를 비교적 간단하게 산출할 수 있다.⁽⁷⁾

간접세 중에서 附加價值稅는 모든 상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부담의 분배가 쉽게 추정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좀더 복잡한 문제가 개재되어 있다. 현실에서는 정책적 목적에 의해 도입된 零稅率 또는 免稅制度가 존재하므로 각 가계의 소비지출 중 실제로 과세되는 품목에 대한 지출이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都市家計年報』의 전가구, 전항목 소비지출 자료를 이용하여 소비항목별 평균 과세비율을 구한 후, 이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별 과세대상 상품에 대한 소비지출액을 추정하였다. 대개의 非내구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추정하였고, 내구재(자동차,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1992년도 구입분의 부가가치세와 特別消費稅를 추정하는 방식을 취했다.⁽⁸⁾ 이 때 주요 내구재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이 사용용량이나 배기량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한편, 電話稅나 담배消費稅는 지출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액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과세대상 소비지출액이 조사되지 않은 酒類 등 일부 소비관련 세목은 소비지출에 비례하여 할당하였다.⁽⁹⁾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소득세는 부담의 전가가 일어나지 않는 반면, 간접세의 경

(7) 다만 1차연도(1992) 家口消費支出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소비항목(담배, 통신, 전기, 수도, 전화사용료)의 경우에는 KHPs의 個人파일과 2차년도(1993) 자료를 통해 보완하였다. 예컨대 담배의 경우 1차년도 개인파일에서 담변한 자료를 家口파일과 합치는 방식으로 추정하였고, 전기, 수도, 전화사용료는 1993년도 지출을 2차년도 자료에서 추정한 후 1992년도 實質值로 환산하여 반영하였다.

(8) 自動車에는 간접세만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직접세도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직접세 중 購入 단계에 내는 세금은 1992년도 구입분에 대해서 산출하였고, 保有나 利用단계 세금은 자동차 전보유가구를 대상으로 추정하였다.

(9) 關稅의 경우에는 관세의 부담비율을 추정할 근거가 없고, 관세의 성격이 소비자부담보다는 輸入規制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정하지 않았다.

우에는 완전히 소비자에게로 전가된다는 가정하에서 부담분배의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부담의 전가 여부를 비교적 명백하게 판단할 수 있어 그와 같은 가정이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醫療保險과 國民年金 酒出料 중 피고용인 부담분의 경우에도 전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가정을 세워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조세(법인세, 부동산관련세, 고용주의 사회보장 분담금)의 경우에는 부담의 전가에 대해 그처럼 명백한 판단이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귀착가정을 세워 분석을 진행시킬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法人稅의 경우에는 누가 그 부담의 궁극적 주체가 될지 확실하게 집어 말하기 힘들다. 부담의 주체는 주주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재산보유자가 될 수도 있으며, 혹은 소비자나 근로자가 될 수도 있다. 상품과 노동시장의 여건, 자본시장의 여건 등 많은 요인들이 부담의 귀착양상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누가 궁극적으로 법인세의 부담을 지게 될지는 명백하지 않다. 토지나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경우에도 실제 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백하게 알기 힘들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유주가 부담을 질 수도 있고, 입주자와 소비자가 부담을 질 수도 있으며, 혹은 자본소유자 전체가 그 부담을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부담의 귀착양상이 모호한 경우에는 적절한 귀착가정을 채택해 분석을 진행시킬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 방면의 연구에서 권위로 인정되고 있는 Pechman(1985)의 예를 참조하여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 그룹 8가지 유형의 複數 歸着假定을 세우고 있다 [Pechman(1985, pp.34-37)]. 뒤에 설명이 되겠지만 각 그룹은 배경을 이루고 있는 귀착이론에 따라 구분되고, 한 그룹 안에서는 부분적인 가정의 차이에 따라 2~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실제로 귀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실증연구가 미약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복수가정의 채택을 통해 분석에 유연성을 도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우선 A그룹은 노동과 자본의 공급이 고정되어 있고 完全競爭이 이루어지며, 가격은 신축적이고, 요소의 이동성이 완전한 경제를 상정하고 있다. 이 그룹내에서 세 가지의 유형이 갈라지게 되는 것은 法人稅와 土地財產稅에 대한 귀착가정의 차이 때문이다. A1과 A2는 모두 법인부문의 자본소유자가 법인세의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전가과정을 통해 비법인부문을 포함한 전체 자본소유자가 지게 된다고 보는 특징을 갖고 있다.(10) 따라서 법인

(10) 法人稅가 부과되면 稅後 收益率이 감소되기 때문에 법인-비법인부문의 수익률이 같아질 때까지 資本이 법인부문을 떠나 非법인부문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產出效果와 要素代替效果의 크기에 따라 그 부담의 방향이 정해지게 된다.

〈表 1〉 租稅歸着假定

세금의 종류	귀착 계층	A그룹			B그룹			C그룹		
		1	2	3	1	2	1	2	3	
소득세	납세자	*	*	*	*	*	*	*	*	*
간접세	과세된 소비	*	*	*	*	*	*	*	*	*
법인세	① 배당 수취자				*	*				
	② 일반재산보유자	*	*							
	③ 배당수취자 50%, 일반재산보유자 50%			*						*
	④ 배당 50%, 소비자 25% 피용자 25%							*		
	⑤ 일반재산보유자 50% 소비자 50%								*	
토지분 재산세	① 지주	*			*	*	*	*	*	*
	② 일반재산보유자		*	*						
건물분 재산세	① 입주자와 소비자				*	*	*	*	*	
	② 일반재산보유자	*	*	*						
	③ 입주자와 소비자 50% 일반재산보유자 50%									*
피고용인의 사회보험부담	피고용인	*	*	*	*	*	*	*	*	*
고용주의 사회보험부담	① 피용자	*	*	*	*		*			
	② 피용자 50%, 소비자 50%					*		*		

註: 1) *는 조세를 부담하는 귀착계층 또는 소득종류를 의미함.

2) 법인세는 법인세, 자산재평가세, 주민세 중 법인세분을 포함.

3)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초과이득세, 토지분 취득세, 토지분 등록세, 종합토지세, 토지분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포함하며, 건물분은 건물분 취득세, 건물분 등록세, 재산세, 건물분 도시계획세를 포함함.

4) 사회보험부담은 의료보험료과 국민연금 약출료임.

資料: Pechman (1985, p35).

인세의 부담은 각 가계의 재산소득에 비례하여 귀착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반면에 A3에서는 법인세를 전체 자본소유자와 주주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경우에는 법인세 부담의 절반은 각 가계의 재산소득,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배당소득에 비례하여 귀착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A1과 A2는 土地에 대한 財產稅 부담이 어떻게 귀착되느냐에 대한 가정에서 차이를 보인다. A1에서는 현재 토지를 보유한 지주가 그 부담을 전적으로 지게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재산세 부담이 모두 資本化(capitalize)된다고 보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土地價額에 비례하여 각 지주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비해 A2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전체 자본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는 차이를 갖고 있다. 또한 A3 역시 전체 자본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부담을 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建物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에는 이 A그룹 전체에서 동일한 가정이 채택되고 있다. 즉 이 조세의 부담은 재산보유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가정을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뒤에서 보겠지만 다른 그룹에 속한 귀착가정에서는 건물서비스의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일부 혹은 전부 전가된다고 가정한다. 이에 비해 A그룹에 속하는 귀착가정은 그와 같은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특징을 갖고 있다.

B그룹은 법인부문의 자본소유자, 즉 배당수취자가 法人稅의 부담을 진다고 본다는 점에서 A그룹과 차이를 갖는다. 그리고 토지분 재산세는 지주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건물분 재산세는 임차인 또는 상품의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점에서도 대조적이다.⁽¹¹⁾ 이 B그룹에서 채택하고 있는 가정들은 部分均衡 분석에서 나오는 결론을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B그룹 내에서 갈라지는 두 가지 유형은 고용주가 내는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 객출료의 부담을 결국 누가 지게 되는 것으로 보느냐에 차이를 갖고 있다. 즉 B1은 이를 피고용인이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반면, B2는 피용자와 상품의 소비자가 각각 반씩 나누어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는 데 그 차이가 있다.⁽¹²⁾

C그룹은 A그룹과 B그룹의 折衷型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법인세와 재산세의 부담이 부분적으로 전가되어 궁극적으로 다양한 계층이 부담을 나누어 진다고 보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법인세는 자본 전체나 법인부문 자본소유자만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나 상품의 소비자도 부분적으로 나누어 부담할 수 있음을 가정한다. C1은 이 세 가지 계층 모두가 법인세의 부담을 나누어 진다고 보는 특징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부담의 절반은 주식보유자, 1/4은 법인에서 생산한 상품의 소비자, 그리고 나머지 1/4은 법인의 피고용인으로 나뉘어진다고 가정한다. 반면에 C2는 법인세 부담의 절반이 일반재

(11) 실증분석에서는 自家 및 傳·月貲 入住者와 消費者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여기서 자가입주자는 주택소유자가 아니라 자가주택을 사용하는 소비자로서 부담하는 것이다.

(12)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社會保險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92년의 경우 피고용인과 고용주분담금을 모두 합할 경우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4%(5조 5,358억원)에 이른다.

산보유자에게,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마지막으로 C3는 법인의 주주와 일반재산보유자가 법인세 부담의 반씩을 나누어 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土地分 재산세의 경우에는 C그룹에 속한 모든 귀착가정에서 지주가 그 부담을 지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B그룹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 建物分 재산세 부담의 귀착에 대해 C1과 C2에서 채택하는 가정은 B그룹에서와 같이 임차인과 소비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것이다. 반면 C3에서는 그 부담의 반을 일반 재산보유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반은 임차인과 소비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재산세의 부담귀착과 관련한 가정에서 B그룹과 C그룹이 갖는 차이는 바로 이 C3에서의 차이뿐이다. 마지막으로 雇用主의 社會保險 분담금의 경우, C1과 C3에서는 피고용인이 궁극적으로 그 부담을 전부 진다고 가정하는 한편, C2에서는 피용자와 상품의 소비자가 반씩 부담을 나누어 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3. 資料의 母集團化

본고의 실증분석에서 기초로 삼고 있는 KHPs자료가 정부에서 발표한 1992년도 전국통계와 일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加重值를 부여하여 KHPs의 표본자료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 수정의 절차는 표본분포의 특성을 모집단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는 단계와 구해진 표본의 핵을 『國民所得計定』 등과 비교하여 수정하는 두 단계를 거친다.

이러한 모집단화를 행하기 전에 먼저 1992년도 總家口數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1985년과 1990년에 이루어진 人口센서스 자료에서 도시와 농촌지역의 연평균 가구 증가율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 증가율을 趨勢로 간주하며, 1992년까지 가구수가 해마다 같은 율로 증가하였다고 가정하고 도시와 농촌지역의 가구수를 추정하였다. 1985년에서 1990년간의 도시지역 연평균 가구증가율 5.98%를 반영한 결과 1992년 도시지역 가구수는 950만 4,052가구로 추정했으며, 농촌지역은 연평균 가구증가율 -2.25%를 반영한 결과 276만 3,474가구로 추정했다. 그 결과 전체 모집단 가구수는 1,226만 7,526가구로 추정되었다. 이 추정결과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가구의 비율은 1990년의 74.5%에서 1992년에는 76%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난다.⁽¹³⁾

(13) KHPs 표본조사자료에는 都市地域이 77.5%로 그 비중이 약간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表 2〉 年度別 家口數의 變化

(단위: 가구, %)

	1985	1990	연평균증가율	1992
도 시	6,330,798	8,462,417	(5.98%)	9,504,052
농 촌	3,240,563	2,892,123	(-2.25%)	2,763,474
합 계	9,571,361	11,354,540	(3.48%)	12,267,526

資料: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表 3〉 家口員數에 따른 母集團과 標本의 比較(都市)

(단위: 건, %)

가구원수	모집단		표 본		가중치
	자료수	비율	자료수	비율	
1인	812,662	8.6	128	3.7	6,348.9
2인	1,164,076	12.2	313	9.1	3,719.1
3인	1,856,725	19.5	802	23.3	2,315.1
4인	3,035,674	31.9	1,434	41.6	2,116.9
5인	1,817,130	19.1	536	15.5	3,390.2
6인	516,500	5.4	185	5.4	2,791.9
7인	198,392	2.1	36	1.0	5,510.9
8인	68,786	0.7	10	0.3	6,878.6
9인 이상	34,108	0.4	3	0.1	11,369.4
합 계	9,504,052	100.0	3,447	100.0	2,757.2

註: 모집단의 가구원수별 비율은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비율임.

3. 1. 標本分布의 母集團化

본 논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표인 家口員數 분포를 사용하여 표본분포를 모집단화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 때 가구분포의 특성이 상이한 도시와 농촌의 양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가구원수 분포를 기준으로 모집단화를 시행했다.⁽¹⁴⁾ 이 경우 도시지역의 표본의 모집단화 가중치는 평균적으로 2,757.2의 값을 가지며, 최소 2,116.9에서 최고 11,369.4까지의 범위에 분포하고 있는 한편, 농촌지역은 평균치가 2,918.1이고, 최소

(14) 『都市家計年報』를 보면 도시지역 전가구의 경우 1990년 이후 1992년까지 平均家口員數가 3.99, 3.97, 3.92명으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農家의 경우에도 『農家經濟調查』를 보면 1990년에서 1992년까지 평균가구원수는 3.97, 3.82, 3.70으로 변동폭은 크지 않은 편이었다.

<表 4> 家口員數에 따른 母集團과 標本의 比較(農村)

(단위: 건, %)

가구원수	모집단		표 본		가중치
	자료수	비율	자료수	비율	
1인	284,635	10.3	73	7.7	3,899.1
2인	505,678	18.3	174	18.4	2,906.2
3인	487,354	17.6	163	17.2	2,989.9
4인	618,947	22.4	229	24.2	2,702.8
5인	498,874	18.1	162	17.1	3,079.5
6인	201,777	7.3	76	8.0	2,655.0
7인	104,507	3.8	39	4.1	2,679.7
8인	40,663	1.5	25	2.6	1,626.5
9인 이상	21,039	0.8	6	0.6	3,506.4
합 계	2,763,474	100.0	947	100.0	2,918.1

註: 모집단의 가구원수별 비율은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비율임.

1,626.5에서 최고 3,899.2의 범위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이 경우 母集團化 加重值는 9개 가구규모, 2개 지역으로 모두 18개를 사용하게 된다. 이 가중치의 분포는 최소치와 최고치간에 약 7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가중치의 부과가 통계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1인 가구의 경우 가중치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서 전체적으로 이를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소득과 조세부담 수준을 낮출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3.2. 所得 및 資產의 母集團化

3.2.1. 資產

표본분포의 모집단화후 소득과 자산규모가 國民所得計定이나 國富統計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살펴보고, 오차를 수정하는 작업이 바로 소득과 자산의 모집단화다. 우선 KHPS 자료에 보고된 자산 규모가 기존의 국부통계에서 파악된 자산과 비교하여 왜곡이 존재하지나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모집단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수정된 자료를 분석에서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는 국부통계가 제대로 수집되어 있지 않아 마땅한 비교의 대상을 찾

(15) 표본분포의 母集團化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① 平均加重值를 사용하는 방법, ② 한 가지 分布特性만을 반영하는 방법, ③ 두 가지 이상의 結合分布를 사용하여 반영하는 방법이 있다.

〈表 5〉 KHPs資料와 國民貸借對照表의 資產比較

	KHPs(A)		韓國銀行(B) 국민대차대조표 (조원)	비율 A/B(%)	가중치
	평균자산 (백만원)	전국합계 (조원)			
실물자산	48.5	595.3	1,366.1	—	—
주거용토지와 건물	42.2	517.9	896.2	57.8	1.730
전세 및 월세 보증금	6.3	77.4	—	—	—
기타부동산	—	—	469.9	—	—
금융자산	6.7	82.7	306.7	27.0	3.710
통화	—	—	5.2	—	—
예금	3.8	46.3	141.0	32.8	3.045
채권	0.03	0.3	46.1	0.7	143.7
주식	0.5	6.6	50.2	13.1	7.613
보험	1.7	20.4	51.5	39.6	2.526
기타(계 등)	0.7	9.1	12.7	71.3	1.403
총가계자산	55.2	678.0	1,672.8	40.6	2.647
부채	7.0	85.5	131.5	65.0	1.538
순가계자산	48.2	592.5	1,541.3	38.4	2.601

註: 1) 국민대차대조표에서는 KHPs와 달리 건물가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부동산 전체에서 건물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로 낮기 때문에 건물가액을 고려하지 않았음.

資料: KHPs 원테이프(1994);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94.

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국부의 『國民貸借對照表』(national balance sheet)를 작성하여 국부의 총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와 같은 형태의 구체적인 국부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매년 작성되는 국부통계는 금융자산 및 부채의 규모를 나타내는 『資金循環表』의 잔액표가 고작일 뿐이다. 실물자산의 경우 『國富統計調查』에서 토지가 빠진 상태로 주택의 건물분에 대해서만 10년마다 한번씩 조사될 뿐이며 그나마 1987년 수치가 가장 최근의 자료인 실정이다. 그러므로 자산의 모집단화를 위해서 각 자산에 대해 행해진 독립적 조사에 기초하여 국부의 '國民貸借對照表'를 비공식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KHPs자료와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¹⁶⁾

(16) Wolff(1987)는 1962~83년간 미국의 자산 불평등에 대한 연구에서 巨視자료인 '國民貸借對照表' (national balance sheet)과 微視자료인 서베이 자료를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

이렇게 산출한 자산관련 통계수치를 KHPs자료상의 자산관련 통계수치와 비교한 결과는 <表 5>에 요약되어 있다. 우선 표의 A열에는 KHPs자료에 나타난 자산의 크기가 가계당 평균치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B열에는 ‘국민대차대조표’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 제시된 수치는 각종 조사자료에 단편적으로 나타난 자산관련 통계를 이용하여 1992년도 전국가구자산을 추정한 결과들이다. 그리고 C열에는 A열의 수치를 B열의 수치로 나눈 비율이 %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B열에 나타난 통계수치는 다음과 같은 산출과정을 거쳐 도출되었다.

우선 住居用 토지와 건물의 가치는 1992년도 전국지가총액에서 주거용 토지의 자산가치를 나타낸다. 이 자산가치는 건설부가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계산한 1990년 말 현재 전국지가총액 1,614.5조억원이란 수치에 매년의 지가변동률을 곱하여 계산해냈다[李性旭·玄鎮權(1993, p.11)]. 이렇게 구한 1992년 현재 전국토지의 자산가치 1,797.7조원에는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토지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내무부가 『地籍統計』에서 제시한 개인토지보유비율이 76%이므로 전국토지의 자산가치에 이 비율을 곱하면 개인이 보유한 토지의 총가액을 산출할 수 있는데, 그것은 1,366.1조원으로 나타났다[이성욱·현진권(1993, p.2)]. 여기에서 다시 주거용 부동산만의 가치를 추출해내야 하는바, 이 점과 관련해서는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 중 주거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65.6%라는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¹⁷⁾ 그리고 개인토지보유총액에서 주거용을 제외한 금액을 기타 부동산이라 하여 <表 5>에 반영하였다.

금융자산 및 부채는 韓國銀行 『資金循環表 殘額表』의 금융자산 및 부채를 나타낸 수치다. 다만 『자금순환표』에 나타난 주식항목의 수치가 ‘주식회사의 資本金’ 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주식의 시가총액으로 대체하였다[韓國銀行(1987, p.19)].⁽¹⁸⁾

이렇게 구한 실물자산, 금융자산, 그리고 부채총액에 기초하여 전국 純家計資產을 계산해낼 수 있다. 1992년도 가계의 총자산 규모는 1,672.8조원인 반면 부채는 131.5조원이었으므로 전국가구의 순자산의 규모는 1,54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되어 나온다.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실물자산으로서 전체 자산의 79.9% 수준에 이른 한편, 금융자산은 전체 자산의 20.1%에 그치고 있다.

다. 그가 제시한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서베이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항목을 ‘국민대차대조표’에서 추정하여 개인가계 표본조사에 반영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가계자산을 국민대차대조표와 비교하여 모집단화하는 것이었다.

(17) 이 비율은 KDI가 행한 『國民意識調查』의 추정자료에서 따왔다.

(18) 여기에 반영된 株式資產價格은 上場株式時價 112.7조원이다. 그리고 個人 富를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부문 보유비율은 증권거래소에서 제시한 44.57%를 사용하였다.

A열에 나타난 KHPS자료상의 수치를 B열에 나타난 '國民貸借對照表' 상의 수치와 비교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C열을 보면 전 자산항목에 걸쳐 KHPS자료상의 자산규모가 더 작게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양자의 비율을 보면, 주거용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는 57.8%,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27.0%로서 금융자산의 過小報告가 특히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자산자료의 보고비율을 소득자료의 보고비율과 비교해 보면, 소득자료의 경우 KHPS자료상의 총소득이 『국민소득계정』상 총소득의 91.7%에 달해 그다지 심한 정도로 과소보고되지 않은 것에 비해, 자산자료의 경우에는 매우 심한 정도로 과소보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¹⁹⁾ 이 <表 5>에 나타난 비율을 이용하여 자산의 모집단화를 시도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Leipziger et al. (1992)의 방법에 따라 자산별로 다음과 같이 모집단화하는 과정을 밟았다.⁽²⁰⁾

첫째 金融資產의 경우 과소보고되는 정도가 금융자산 보유액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각 금융자산별로 가중치를 주어 현실에 가까운 수치로 만든다. 금융자산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를 과소보고하는 비율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자료상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단순화 가정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금융자산별로 다른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모집단화 과정에서 생길 오차를 가능한 한 줄일 수는 있다.

둘째 不動產의 경우에는 주거용 부동산과 주거용 이외의 부동산이 자산운용상에서 갖는 의미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각각 다른 가중치를 적용한다. 우선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國民대차대조표' 와의 차이가 모두 부동산보유 상위 10%에 속하는 가계의 과소보고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가정한다. 이와 같은 가정은 KDI가 발표한 1988년도 부동산 관련자료를 土地公概念委員會의 토지분포자료와 비교한 결과에서 그 정당화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전산자료인 토지공개념위원회의 자료를 기준으로 삼아 서베이방식에 의해 수집된 KDI자료를 이에 비교해 보면 각 소득계층별로 보유부동산에 대한 과소보고비율이 달라진

(19) 日本이나 美國의 경우에도 표본조사의 資產報告 比率이 낮은 것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일본 經濟企劃廳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표본조사를 국민대차대조표의 자산통계와 비교해 볼 때 金融자산은 36.1%, 實物자산은 63.9%(토지는 53.3%)만이 파악될 뿐이다. 동 자료는 미국의 경우도 예시하고 있는데, 금융자산은 60.8%, 실물자산은 39.2%(토지는 14.1%)에 불과하다[日本經濟企劃廳(1990, p.26)].

(20) Leipziger et al. (1992)는 KDI의 資產平均值 자료를 이용하여 세 가지 방법의 母集團化를 제시하고 있다. ① 평균적으로 家計資產을 증가시키는 방법, ② 富의 전체차액 중 절반을 최상위 층이 과소보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가시키는 방법, ③ 그리고 마지막으로 最上位層이 전체 차액을 과소보고한 것으로 보는 방법 등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번째 방법을 사용할 경우 자산이 최상위층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상위층의 자산을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다. 반면 두번째, 세번째 방법은 최상위 1%, 5%를 분석하는 경우 첫번째 방법보다는 현실적이겠지만 반영비율을 자의적으로 결정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表 6〉 KHPs資料와 韓國銀行 國民計定의 所得比較

	KHPs(A)		한국은행(B)	비율 A/B(%)	가중치
	평균자산 (만원)	전국합계 (10억원)	국민소득계정 (10억원)		
임금 및 기타소득	892.0	109,430	114,283	95.8	1.044
영업잉여	550.1	67,479	47,988	140.6	0.712
(농업)	(66.4)	(8,147)	(14,455)	(56.4)	(1.774)
재산소득	72.6	8,914	18,068	49.3	2.069
지대	(52.5)	(6,441)	(671)	(960.6)	(0.104)
이자배당	(20.2)	(2,473)	(17,398)	(14.2)	(7.034)
사회보험	8.4	1,031	4,142	24.9	4.017
사회부조	3.1	375	1,769	21.2	4.715
경상이전소득	31.5	3,858	22,189	17.4	5.752
합 계	1,557.7	191,088	208,439	91.7	1.091

資料: KHPs 원테이프(1994)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94.

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과소보고비율이 최상위층에서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이다. 즉 최상위 1분위계층을 제외한 다른 소득계층에서는 보유부동산의 과소보고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데 비해, 최상위 1분위에서는 보고비율이 고작 0.39에 불과해 무려 61%에 달하는 과소보고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감안할 때 KHPs자료와 '국민대차대조표' 사이에 존재하는 주거용 부동산 보유액의 차이가 실제로는 전부 최상위 계층의 보유분이라는 처리방식에 상당한 정당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각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주거용 이외 부동산의 크기는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住宅의 규모에 비례하여 커진다고 가정한다.⁽²¹⁾ KHPs자료가 주택보유액만을 조사하고 주거용 이외 부동산 규모는 조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추정된 주거용 이외 부동산 보유규모와 '국민대차대조표' 상의 수치와의 차이는 주거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상위 10% 계층이 과소보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적절한 가중치를 적용하게 된다.

3.2.2. 所得

KHPs標本調查와 『國民所得計定』을 비교해보면, 동일 소득항목으로 조사된 경우에도

(21)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住居用 이외의 不動產 보유가 주거용 보유보다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 있다.

兩者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22) 우선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KHPs 소득자료에 기초하여 국민 전체의 소득을 계산해 보면 191조 887억원으로서 『국민소득계정』상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개인부문 소득 총액인 208조 4,393억원보다 8.3% 정도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뿐 아니라 所得의 類型에 따라 어떤 소득의 경우에는 한쪽이 더 큰가 하면 다른 경우에는 그 반대의 상황을 보이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勤勞所得과 財產所得, 社會保險 및 公共扶助, 經常移轉에서는 KHPs 자료가 『국민소득계정』의 그것에 비해 더 작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으며, 반대로 營業剩餘의 경우에는 더 크게 나타나 있음을 본다. 특히 재산소득 중 地代는 『국민소득계정』에 비해 무려 9배 이상의 크기로 파악되어 있는 반면, 利子配當所得은 1/7 정도밖에 안되는 크기로 파악되어 있다.

전혀 다른 근거 위에서 추정된 두 자료의 수치가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와 같은 차이가 날 만한 이유가 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勤勞所得의 경우에는 KPHS 자료상의 수치가 『국민소득계정』의 수치에 비해 더 작을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 『국민소득계정』의 임금항목에는 근로자 자신의 임금소득뿐 아니라 고용주의 社會保障 分擔金이나 產災保險金, 退職充當金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를 통해 임금소득이 얼마나고 물었을 때 이 부분까지 포함시켜 대답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설문조사에 의존한 결과인 KHPs 자료에서 임금소득이 국민소득계정보다 4.2%(약 4조 8천억원) 정도 더 작게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주의 사회보장 분담금(국민연금, 의료보험료)을 조세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KHPs 자료에서 이를 추정하여 소득기준에 반영하였다. 사회보장 분담금의 경우 개인분담금과 동일한 금액을 기업이나 정부가 부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소득에서 산출한 국민연금 객출료나 의료보험료와 같은 금액을 고용주가 분담한다고 추정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영업잉여의 경우에는 KHPs 자료상의 수치가 『국민소득계정』의 소득수치보다 더 크게 나타나 있지만, 이를 보고 KHPs 자료에서 이 소득이 과대보고되어 있다고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地下經濟의 정확한 규모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완전히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만은 모두들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지하경제가 광범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특히 속이기 쉬운 營業剩餘 같은 소득의 경우 『국민소득계정』에 반

(22) 여기서 標本資料는 표본분포에 대한 加重值를 부여한 이후에 산출된 것이다.

영된 부분은 현실의 일부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무척 크다. 그렇다면 양자 사이에 나타난 차이를 놓고 KHPs자료가 영업잉여를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볼 것이 아니라『국민소득계정』이 이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마땅하다. 따라서 영업잉여의 경우에도 앞서 본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모집단화의 과정 없이 KHPs자료를 그대로 사용해도 좋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KHPs자료에서 재산소득 중 地代의 보고액이 『국민소득계정』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두 통계자료의 포괄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소득계정』에 나타난 재산소득 중 하나인 貨料는 임대된 토지에서 발생하는 순임료(= 총임료 - 토지에 대한 유지비)와 特許權, 商標權, 著作權 등 독점적 권리의 사용료를 의미하는 반면, KHPs자료에서는 임대료가 주택임대료, 토지임대료, 기타 재산임대료를 합친 것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KHPs자료상의 임대료에는 住宅貨貸料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로서, 바로 이 차이 때문에 『국민소득계정』상의 임료보다 그렇게 큰 금액으로 나타나게 된다.(23)

지대와는 반대로 利子配當所得의 경우에는 KHPs자료에서 보고된 규모가 『국민소득계정』에서 파악된 이자배당소득의 14.2%에 불과한데, 이는 실제로 과소보고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는 금융소득의 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매우 팽배해 있고 이와 같은 일반적인 경향이 설문조사에 응답할 때도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과소보고된 이자배당소득을 모집단과 가깝게 만들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KHPs자료의 이자배당소득과 『국민소득계정』 상의 이자배당소득을 비교하여 후자가 $7.034\text{배} (= 17,398/2,473)$ 더 크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다음에는 각 가계가 이자배당소득을 바로 이 비율로 과소보고했다고 가정하여 서베이자료의 이자배당소득에 7.034를 곱함으로써 모집단화를 행하게 된다.

社會保險과 公共扶助(public assistance)의 경우는 전체 지급액의 20% 정도만이 서베이 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사회보험 소득은 의료보험과 각종연금의 급여비가 해당되는데, KHPs조사에서 연금급여는 조사가 되지만 의료보험급여는 가계소득으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경우 <表 6>의 보고율은 상승하게 된다.(24) 1992년도 각종 年金(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의 총급여액은 2조 1,710억원이므로 KHPs보고율은 47.5%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금급여액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 급여규모로 모집단화하였고, 의료

(23) KHPs자료에서는 住宅貨貸料와 土地貨貸料가 구분되지 않고 있어 그 규모를 알 수 없지만, KDI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료는 전체 貨貸收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24) 1992년도 醫療保險 급여총액은 2조 1,952억원이었다(保健社會部(1994, pp. 232-233)).

보험 급여는 가계수입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각 가계의 의료비지출액에 비례하여 할당하는 방식으로 소득에 산입하였다.

공공부조의 경우 『국민소득계정』상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민간 비영리단체 및 準법인기업에 지급하였더라도 이 항목에 기록하기 때문에 가계의 공공부조 수입과 비교할 때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KHPs자료에서 공공부조제도에 의해 정부에 의해 지불된 扶助金 규모는 1,245억원으로 나타나 1992년도에 실제 가계에 지불한 금액인 4,652억에 비해 크게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조에 의한 지원액은 공공부조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고 KHPs자료의 정부지원금을 가계의 공공부조금으로 대체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체한 공공부조금은 居宅保護, 自活保護 및 醫療保護 등 세 가지 공공부조제도에 의한 지원금이다.(25)

이전소득의 경우, 『국민소득계정』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送金, 廉弔費, 불우이웃돕기 誠金 등 서베이 자료에서 수입으로 파악되기 어려운 소득이 다수 포함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여 이 항목은 KHPs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조세부담분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상의 가계소득 이외에 실현된 자본이득 및 法人の 社內留保와 법인세중 가계의 歸屬分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본이득 중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KHPs자료에 조사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 금액을 국세청의 양도소득금액과 비교하여 모집단화하였다.(26) 주식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중장기적으로 법인의 사내유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의 사내유보로 대체하였다. 그리고 법인의 사내유보는 『국민소득계정』상의 법인저축액을 사용하는데, 1992년도 법인의 사내유보는 9조 391억원의 규모에 달했고 개인이 보유한 주식은 전체의 44.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사내유보의 가계귀속분을 산출해 보면 4조 287억원이라는 수치를 얻을 수 있다.(27) 한편 개별 가계의 사내유보금액은 주식보유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다.(28) 법인세도 사내유보와 마찬가지로 가계의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하여 총액을 산출하고 이를 가계의 주식보유 비율에 비례해서 귀속시켰다.(29) 이상의 가계소득에 간접세를 더한 조정된 가계

(25) 이 때 自活保護의 내용 중 직업훈련과 응자지원은 그 대상자가 소수이고, 그 지원금액도 작은 규모라서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26) 1992년도 양도소득금액으로 국세청에 보고된 액수는 4조 6,975억원이다(국세청(1993, p.79)).

(27) 國民所得計定상에서 전체 配當所得 중 개인부문이 차지하는 배당소득의 비중은 47.6%로 주식보유비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28) 원래 기준소득은 配當所得이 되어야 하지만, KHPs자료에서 배당소득만을 따로 조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代理變數로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사내유보를 배분하였다.

소득(adjusted family income)이 본 분석의 소득기준이 된다.⁽³⁰⁾

4. 脫漏所得의 推計

所得稅制가 갖는 누진성은 脱漏所得이 分석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勤勞所得의 경우에는 대부분 소득이 발생되는 즉시 원천과세되기 때문에 탈세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반면에 事業所得은 쉽게 탈루시킬 수 있고 또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탈루된 사업소득의 파악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³¹⁾

일반적으로 탈루소득의 추계방식으로는 지출-소득격차방식, 현금통화 대 요구불예금 비율방법 등과 같은 간접적 추정방법과 더불어 탈세조사방법, 세무조사 및 납세보고조사와 같은 직접적 추정방법이 있다.⁽³²⁾ 우리 나라에서 행해진 바 있는 기존의 탈세관련 연구는 간접적 추정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자료상의 제약이 크기 때문에 이 방식의 채택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생각한다.⁽³³⁾

그런데 KHPS자료에는 1992년도에 실제로 납부한 綜合所得稅額을 조사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기초하여 소득의 탈루규모를 직접 추정할 수 있다. 추정의 첫 단계는 우선 응답자가 보고한 종합소득세액으로부터 逆算過程을 통해 조세납부시 산출된 課稅標準所得의 크기를 구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는 응답자가 보고한 소득과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각종 控除項目을 뺀 과세표준소득을 계산해낸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에 의

(29) 법인세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할당하는 것은 국민소득계정 방식에 의해 소득을 산출하는 귀착모형 B1의 가정하에서 이루어진다. 귀착가정이 변동함에 따라 귀속가계와 간접세의 규모가 변화되기 때문에 전체 소득과 조세액은 모든 모형에서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Pechman(1985, pp. 39-41)을 참조할 것.

(30) 개별가계의 조정된 가계소득은 국민계정상에서 보면 국민소득에 간접세를 더한 國民純生產(Net National Product)의 개념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순국민생산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조세부담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간접세를 포함한 소득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1) 自營所得 이외에 주요한 脱稅 대상으로 財產所得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재산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利子配當所得의 경우 종합과세가 되지 않고 전액이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그 비율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賃貸所得의 경우 탈세비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임대업자의 개념이 불분명하여 엄밀하게 과세대상을 선정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32) 美國에서는 稅務監查(audit)가 이루어진 자료가 公刊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직접적 추계에 위한 방법이 발전해 있다[Clotfelter(1983), Bishop et al.(1994)].

(33) 우리 나라에서 행해진 연구로는 崔洸(1987), 盧基成(1992), 柳一鎬(1994) 등을 들 수 있다.

〈表 7〉 自營業者의 脫漏所得比率 推計(1992)

과세표준 단계	탈루소득/총소득	탈루소득/과세표준	탈세액/과세액
400만원 이하	31.2	68.9	69.3
400-1,000만원	56.8	80.6	87.4
1,000-2,500만원	68.2	82.4	90.5
2,500-5,000만원	71.0	79.3	88.5
5,000만원 이상	80.9	83.6	91.3
평균	66.1	81.4	89.9

註: 1) 탈루소득이 (-)인 경우는 0으로 처리함.

2) 탈세액은 내야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만 해당함.

資料: KHPS 원테이프(1994).

해 구한 과세표준소득을 비교해 보면 탈루된 소득의 규모를 직접 추정해낼 수 있다.⁽³⁴⁾

이와 같은 직접적 추정방법을 적용하여 얻은 결과를 보면 보고된 종합소득세액에서 계산된 과세표준소득, 다시 말해 실제로 과세대상이 된 소득이 보고된 소득자료에 稅法을 적용하여 계산해낸 원칙상의 과세표준소득보다 더 적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응답자가 세무당국에 소득을 신고할 때 그 차이만큼 탈루시켜 보고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설문조사시에는 소득세 납부액과 소득을 따로 묻기 때문에 정직한 대답을 하게 됨을 전제로 해야만 그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아주 드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납세자가 소득을 過大報告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인데, 이는 납세자가 실제로 과대보고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에 대해 정확하지 못한 답변을 한 결과로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계산결과 탈루소득이 陰(-)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이를 0으로 처리하고, 오직 陽(+)의 값을 갖는 경우만을 모두 더해 소득의 탈루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방법을 썼다.⁽³⁵⁾

이렇게 추정한 결과가 〈表 7〉에 제시되어 있는데, 첫번째 행에는 自營業者의 총소득 중

(34) 微視資料에 의한 脫稅 추정의 문제점에 대해 최광(1987)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자료의 수집에 비용이 많이 들고 수집 자체가 어렵다. 둘째 매년 일관성있게 조사하지 않는 이상 서로 다른 時點간의 결과에 대해 비교가 불가능하다. 세째 표본의 선정과 응답자의 반응에서 부정확성과 무성의는 그 결과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다[최광(1987, p.45)].

(35) 脫稅比率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KHPS자료 중 個人파일이다. KHPS자료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家口파일과 個人파일로 구분되며, 양 자료 모두 소득항목을 포함하고 있지만, 개인소득세 항목은 개인파일에만 포함된다. 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사실상 개인소득에 국한되기 때문에 개인파일의 소득자료를 이용하였다.

탈루된 부분의 비율과 이에 입각하여 계산한 탈루소득비율이 소득계층별로 계산되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행에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탈루소득비율과 탈세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이 추정결과를 보면 자영업자 소득의 평균적인 탈루소득비율은 66.1%에 달하는 규모이며,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에 대한 탈루소득의 비율은 81.4%인 것으로 나와 있다.⁽³⁶⁾ 탈세비율은 소득의 탈루비율보다 일반적으로 좀더 높은 편인데, 이 현상은 누진적인 소득세율구조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이 추정결과에 의하면 자영업자가 내야 할 종합소득세 중 무려 89.9%가 탈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總所得을 기준으로 본 탈루소득비율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상승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탈루비율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고소득층은 납부한 소득세가 얼마인지를 응답하지 않아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들을 포함할 경우 고소득층의 탈루비율은 한층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³⁷⁾ 과세표준에 따른 탈루비율은 최저소득계층을 제외하고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과세표준은 각종 人的控除를 제외한 후의 소득이므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탈루비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게 되고,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탈루비율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상승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영업자 사업소득의 탈루비율은 상대적으로 소득계층별 탈루비율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과세표준 기준 비율을 사용하고 있다. 즉 자영업자의 탈루소득비율이 과세표준의 평균 81.4%에 이른다는 지금까지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이들이 얻는다고 보고한 사업소득의 과세표준 중 18.6%만 실제과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탈세가 존재하는 상황을 분석의 틀 안으로 수용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탈루소득 분석결과를 볼 때, 기존의 연구들처럼 脫稅를 감안하지 않고 稟稅負擔의 분배양상을 분석한다면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큼을 알게 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탈세의 가능성을 명백하게 고려한 상황에서 부담분배의 상황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뚜렷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탈루소득까지 고려하여 부담의 분배를 분석해 보면 기존의 연구들에서 얻은 결과와는 매우 다른 분석결과를 얻게 된다.

(36) 稟制發展研究團의 보고에 의하면 1981년의 경우 自營業者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한 脫漏비율은 61.3%였으며, 柳一鎬는 1988년도 事業所得의 탈루비율은 40~45%로 보고하고 있다(최광(1987, p.192), 유일호(1994, pp.203-204)).

(37) 전체 응답자중 자신의 1992년도 납부 세금을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自營業者 1,428명 중 19.2%에 달했다.

〈表 8〉 模型別 租稅負擔分布

(단위: %)

소득분위	A1	A2	A3	B1	B2	C1	C2	C3
최하위 10%	44.7	43.7	43.7	49.8	51.9	53.2	57.5	47.1
제2 10분위	20.1	18.2	18.1	21.7	22.2	23.0	25.1	20.9
제3 10분위	16.0	15.5	15.4	16.7	17.0	18.1	19.0	16.4
제4 10분위	15.6	15.4	15.3	16.6	16.7	17.9	18.3	16.0
제5 10분위	16.0	15.5	15.4	16.8	16.7	18.2	18.3	16.4
제6 10분위	15.8	15.3	15.4	16.7	16.7	17.9	17.7	16.3
제7 10분위	15.5	14.8	14.8	15.9	16.0	16.9	17.1	15.7
제8 10분위	15.4	15.3	15.4	16.1	15.8	17.3	16.9	15.9
제9 10분위	15.1	14.8	15.0	15.7	15.6	16.2	15.8	15.3
최상위 10%	17.8	18.3	17.9	16.5	16.5	16.1	16.3	17.1
평균세율	16.6	16.5	16.3	16.7	16.7	17.3	17.5	16.7

註: 1) 부담률은 (조세액/소득) × 100임.

2) 모형별로 조세부담률이 다른 것은 귀착형태에 따라 소득과 부담하는 세액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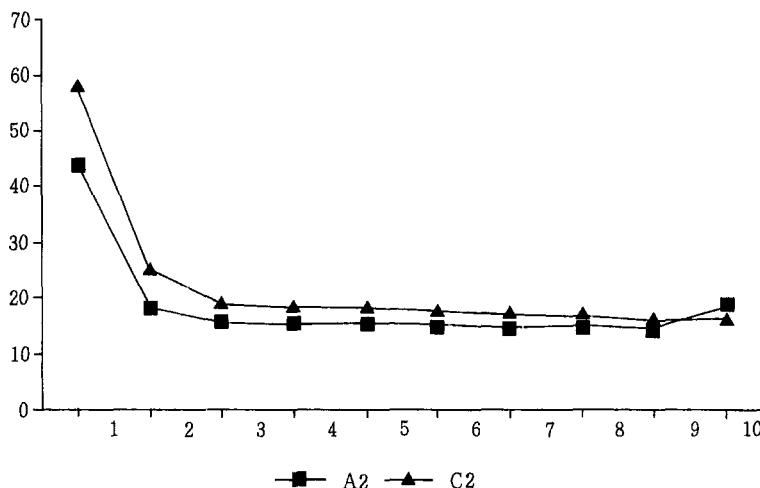
資料: KHPS 원데이프(1994).

5. 分析의 結果

5.1. 租稅負擔分布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에 의해 彙着假定에 따라 갈라지는 모형별 총조세부담분포를 산출한 결과를 〈表 8〉에 요약해 놓았다. 이 表에 제시되어 있는 조세부담분포를 보면 A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B, C모형에서의 조세부담이 좀더 逆進的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어느 모형이건간에 조세부담분포가 역진성을 띤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득계층별 부담분포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最下位層의 부담이 유독 무거워 다른 소득계층의 2배 이상이며, 이 최하위 소득계층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비례세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1〉은 여러 가지의 귀착가정 중 조세부담의 분배가 가장 累進的으로 나타나는 경우와 가장 逆進的으로 나타나는 두 경우를 비교해 보이고 있다. 가장 누진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A2인 반면 가장 역진적인 경우는 C2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두 경우 모두에서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역진적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資料: KHPs 원테이프(1994).

〈그림 1〉 稟稅負擔分布의 比較(A2와 C2)

A2는 미약하지만 최상위층에서 세부담이 커지는 U자형 구조를 보이는 반면, C2는 고소득층으로 올라가면서도 부담이 별로 증가하지 않는 전형적인 역진적 구조를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A2와 C2 사이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가정하고 있는 조세부담 귀착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A2가 높은 누진성을 보이는 이유는 法人稅, 土地財產稅, 建物財產稅의 부담이 재산의 보유자에게 귀착된다는 가정으로 인해 이들이 집중되어 있는 고소득계층의 조세부담이 커지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반면 C2에서 가장 역진성이 커지는 것은 법인세의 50%와 건물재산세 전액, 그리고 사회보장부담의 50%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그뿐 아니라 C2에서 토지재산세는 지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하위 1~2분위 계층에 소득은 적지만 부동산 형태의 자산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한 계층이 존재한다는 점도 전반적인 역진성을 높이는 한 이유가 되고 있다.

〈表 9〉는 新古典派의 模型의 전형적 형태라고 볼 수 있는 A2모형의 소득10분위별 조세부담 분포를 조세별로 세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를 보면 우선 직접세의 경우에는 최하위 10% 및 최상위 10%의 조세부담이 예외적으로 높게 나타날 뿐 전반적으로 比例稅的 성격이 강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직접세의 누진성이 이렇게 미약하게 나타나는 이유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事業所得의 脫漏가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실제의

〈表 9〉 所得階層別 稟稅負擔分布(A2)

(단위: %)

소득분위	전체	직접세					간접세	VAT	특소세	기타
			소득세	법인세	사회보험	부동산세				
최하위 10%	43.74	7.56	0.95	0.61	3.82	0.53	36.18	22.07	3.61	10.50
제2 10분위	18.25	5.06	1.01	0.70	2.19	0.65	13.19	7.96	1.12	4.11
제3 10분위	15.51	5.29	1.06	0.41	2.86	0.37	10.23	6.01	1.13	3.10
제4 10분위	15.37	5.40	1.03	0.24	2.98	0.21	9.97	6.02	1.45	2.50
제5 10분위	15.46	6.29	1.41	0.28	3.42	0.30	9.17	5.44	1.43	2.30
제6 10분위	15.33	7.01	1.91	0.48	3.32	0.42	8.32	4.95	1.30	2.07
제7 10분위	14.79	6.93	2.31	0.52	2.78	0.45	7.86	4.68	1.31	1.86
제8 10분위	15.31	7.69	2.77	0.73	2.63	0.65	7.62	4.56	1.33	1.73
제9 10분위	14.76	8.91	3.65	1.13	2.36	1.06	5.85	3.48	0.98	1.40
최상위 10%	18.32	14.44	5.20	3.20	1.22	4.28	3.88	2.25	0.73	0.91
평균세율	16.47	9.54	3.25	1.48	2.29	1.80	6.93	4.12	1.09	1.73

資料: KHPS 원데이프(1994).

소득세 누진도가 세법에 규정된 명목적인 누진도에 비해 훨씬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최상위 10%의 부담이 유독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자본소유자 일반이 법인세의 부담을 지는 것으로 가정한 데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社會保險의 부담분포는 하위소득계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逆進的 성격이 강하다. 전체적으로 부담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그것이 조세제도 전반의 누진성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綜合土地稅 등 부동산관련세의 경우에는 최하위 1~2분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최상위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比例稅的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³⁸⁾

이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既存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명백해진다. 예를 들어 所得稅 부담의 누진성은 기존의 연구결과가 시사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소득세를 부과한 후의 지니계수를 구해보면 부과전에 비해 改善比率이 겨우 2.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탈세의 존재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나성린·현진권(1993b)의 연구에서는 1991년도의 경우 소득세 부과 후

(38) 最下位 1~2분위 소득계층은 3~4분위 소득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조세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계층이 지는 財產稅의 부담이 비교적 무겁기 때문이다. 이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 중 소득은 별로 없어도 재산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 꽤 섞여 있다. 주로 은퇴기에 있거나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그 유형에 속한다.

의 지니계수 개선 비율이 무려 5.2%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를 보면 탈세를 고려할 때와 고려하지 않을 때의 소득세 누진성의 차이가 무척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39)

한편 間接稅의 부담은 전반적으로 역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附加價值稅制에는 역진성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장치로서 生活必需品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는 免稅制度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부담분포를 보면 역진성을 완화시키는 장치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特別消費稅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하여 도입된 제도지만 이것 역시 역진적 부담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주로 하위 소득계층의 소비비율이 높은 酒稅, 담배消費稅, 電話稅와 같은 기타 간접세는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보다도 한층 더 역진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정도로 間接稅의 逆進性이 비교적 높다는 결과는 성명재(1993)의 연구결과와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는 都市家計와 農村家計를 각각 분리하여 간접세 부담 분배의 양상을 분석하고 있는데, 도시가계의 경우에는 승용차, 대형 가전제품 등과 관련한 조세에서 부분적으로 누진적 성격도 나타나는 등 전체적으로 간접세의 역진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위의 연구자들이 사용한 1991년도 『都市家計年報』의 자료에는 소득분포상의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이 제외되어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KHPs자료는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 중간적인 위치에 속해 있는 소득계층이 자료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상이한 소득계층 사이의 消費支出 패턴에 그리 큰 차이가 없게 나타나는 결과가 빚어지게 된다. 성명재의 연구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최하위 계층의 平均消費性向($= \text{소비}/\text{소득} \times 100$)이 93.2%인 데 비해 최상위층의 평균소비성향은 75.4%가 되어 양자 사이에 그리 큰 차이가 없음을 보게 된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KHPs자료에서 계산한 두 소득계층의 평균소비성향은 각각 297.2%와 27.8%로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40)

(39) KHPs자료 결과와 나성린·현진권(1993b)의 결과를 직접 비교해 볼 수 있게 만들려고 累進度의 측정은 나성린·현진권(1993b)의 방법에 따랐다.

(40) 이러한 소비성향은 A2모형하에서 측정한 것이다. 그리고 最下位所得階層은 주로 실업상태에 있거나, 은퇴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득 그 자체는 매우 낮다. 그렇지만 소비가 일정 수준 이하로는 내려갈 수 없어 빚을 내거나 資產을 처분하여 소비수준을 유지하게 되고, 이에 따라 100%가 넘는 平均消費性向이 나타날 수 있다.

5.2. 租稅의 所得再分配 效果와 逆進性의 정도

조세부과 前의 소득분배 상태를 부과 後의 상태와 비교해 보면 조세부과에 따른 소득재분배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表 10〉에는 조세부과 전후의 지니係數가 제시되어 있으며, 〈表 11〉에는 악킨슨指數가 제시, 비교되어 있다. 우선 A그룹에 속하는 귀착가정 하에서는 조세부과의 결과 지니계수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미미하게 늘어

〈表 10〉 租稅賦課에 따른 지니係數 變化(1992)

귀착 모형	과세전 지니계수	과세후 지니계수	RS 지수 (지니계수 차이)	PO 지수 (지니계수 변화율)
A1	0.4410	0.4429	0.0019	0.44
A2	0.4444	0.4432	-0.0012	-0.28
A3	0.4437	0.4431	-0.0006	-0.13
B1	0.4376	0.4450	0.0074	1.69
B2	0.4382	0.4463	0.0081	1.85
C1	0.4351	0.4464	0.0112	2.59
C2	0.4368	0.4595	0.0227	5.20
C3	0.4392	0.4439	0.0047	1.08

註: 1) 지니계수의 차이는 레이놀즈-스몰렌스키(RS)지수 = 과세후 지니계수 - 과세전 지니계수.

2) 지니계수의 변화율은 페크만-오크너(PO)지수 = (과세후 지니계수 - 과세전 지니계수)/과세전 지니계수.

資料: KHPs 원테이프(1994).

〈表 11〉 租稅賦課에 따른 악킨슨指數 變化(1992)

귀착 모형	과세전 악킨슨 지수			BD 지수			과세후 지수 차이		
	$\varepsilon = 0.1$	$\varepsilon = 0.5$	$\varepsilon = 0.9$	$\varepsilon = 0.1$	$\varepsilon = 0.5$	$\varepsilon = 0.9$	$\varepsilon = 0.1$	$\varepsilon = 0.5$	$\varepsilon = 0.9$
A1	0.0375	0.1781	0.3245	-0.0004	-0.0097	-0.1726	-0.0003	-0.0080	-0.1166
A2	0.0383	0.1814	0.3310	0.0004	-0.0060	-0.1654	0.0004	-0.0050	-0.1107
A3	0.0381	0.1808	0.3304	0.0002	-0.0067	-0.1661	0.0002	-0.0055	-0.1112
B1	0.0368	0.1755	0.3214	-0.0016	-0.0160	-0.1914	-0.0015	-0.0132	-0.1299
B2	0.0369	0.1761	0.3243	-0.0017	-0.0168	-0.1970	-0.0016	-0.0139	-0.1331
C1	0.0363	0.1738	0.3196	-0.0024	-0.0198	-0.2031	-0.0023	-0.0164	-0.1382
C2	0.0367	0.1751	0.3229	-0.0026	-0.0219	-0.2125	-0.0025	-0.0181	-0.1439
C3	0.0371	0.1767	0.3229	-0.0010	-0.0129	-0.1811	-0.0010	-0.0106	-0.1226

註: 1) BD 지수 = $(1 - \text{과세후 악킨슨지수}) / (1 - \text{과세전 악킨슨지수}) - 1$

2) 지수 차이 = 과세전 악킨슨지수 - 과세후 악킨슨지수

資料: KHPs 원테이프(1994).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B, C그룹에 속하는 귀착가정하에서는 지니계수의 값이 과세 후에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앳킨슨지수의 경우에도 ϵ 의 값을 0.1로 잡았을 때 A2, A3 귀착가정하에서 과세의 결과 不平等度가 약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그 외의 모든 경우에서는 과세의 결과 불평등도가 오히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ϵ 의 값을 비교적 크게 잡았을 경우에는 어떤 귀착가정을 채택하였느냐에 관계없이 조세부과의 결과 앳킨슨지수가 일률적으로 上昇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불평등성에 대한 忌避度가 조금만 심한 경우 현행 조세제도가 갖는 재분배효과를 否定的으로 평가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약간 다른 각도에서 우리 나라 조세제도의 所得再分配 效果를 분석해 보기 위해 직접적으로 조세부담의 누진성을 보여주는 租稅集中指數와 租稅逆進度指數를 계산해 볼 수도 있다. 조세집중지수는 계층별 조세부담의 누진도를 알아보기 위한 지수인데, 과세전 소득순으로 조세부담을 배열한 누적인구비율에 따른 누적조세비율을 나타낸다. 한편 조세역진도지수는 과세전 지니계수와 조세집중지수를 이용하여 조세제도의 역진성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카크와니(Kakwani)지수, 케탄-포다(Kehtan-Poddar)지수, 케탄-포다-수츠(Kehtan-Poddar-Suits)지수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카크와니지수(K지수)를 선택하여 분석의 기초로 사용하였다.⁽⁴¹⁾ <表 12>에는 각 조세별로 이 두 가지 지수를 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우선 租稅集中指數를 보면 소득세, 범인세, 부동산관련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조세집중지수가 課稅前 所得分配의 지니계수보다 낮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소득의 분포에 비해 조세부담의 분포가 비교적 더 고르게 퍼져 있음을 의미하는데, 바꾸어 말하면 조세부담분포는 소득분배에 비해 역진적이라는 의미가 된다. 특히 간접세와 사회보험부담의 경우에는 조세집중지수가 크게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싶이 K指數가 0보다 크면 조세부담의 분배가 누진적이라는 의미이고, 0보다

(41) 카크와니指數는 租稅 逆進性指數 중 하나로서 조세집중곡선과 과세전 소득의 로렌츠곡선을 비교하여 누진성을 측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G_x 가 지니계수이고, C_t 는 조세집중지수라고 할 때 카크와니지수(K)는 $K = C_t - G_x$ 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카크와니지수는 과세전소득의 로렌츠곡선과 조세의 집중곡선 사이에 형성된 면적의 2배와 같다. 만약 조세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게(작게) 되면 K는 陽(陰)의 값을 가지며, 조세의 소득탄력성이 1의 값을 가지면 K는 0이 된다. 그러므로 K가 양의 값을 가지면 누진적 조세를 의미하며, 음의 값을 가지면 역진적 조세라는 의미가 된다. 또한 카크와니지수는 構成 稅目으로 分解할 수 있어 역진성에 대한 개별 세목의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다[Kakwani(1980, pp.253-256)].

〈表 12〉 稽稅集中度 및 카크와니指數(1992)

조세집중도	A1	A2	A3	B1	B2	C1	C2	C3
전체	0.433	0.451	0.447	0.403	0.400	0.383	0.376	0.417
직접세	0.573	0.608	0.604	0.551	0.561	0.524	0.549	0.561
간접세	0.236	0.235	0.236	0.241	0.243	0.238	0.237	0.239
소득세	0.672	0.674	0.672	0.668	0.668	0.670	0.670	0.670
법인세	0.778	0.781	0.774	0.784	0.783	0.443	0.411	0.769
사회보험료	0.301	0.301	0.302	0.303	0.277	0.306	0.276	0.302
부동산관련세	0.643	0.832	0.829	0.440	0.441	0.440	0.442	0.531
부가가치세	0.232	0.230	0.230	0.233	0.233	0.232	0.232	0.232
특별소비세	0.324	0.322	0.323	0.326	0.327	0.325	0.326	0.325
K 지수	A1	A2	A3	B1	B2	C1	C2	C3
전체	-0.008	0.007	0.003	-0.034	-0.038	-0.053	-0.061	-0.022
직접세	0.132	0.164	0.160	0.113	0.123	0.089	0.112	0.122
간접세	-0.204	-0.210	-0.208	-0.196	-0.195	-0.197	-0.199	-0.200
소득세	0.231	0.229	0.229	0.231	0.229	0.235	0.233	0.231
법인세	0.337	0.336	0.330	0.346	0.345	0.008	-0.026	0.330
사회보험료	-0.140	-0.143	-0.142	-0.134	-0.162	-0.129	-0.161	-0.137
부동산관련세	0.202	0.387	0.386	0.003	0.003	0.004	0.006	0.092
부가가치세	-0.209	-0.215	-0.214	-0.205	-0.205	-0.203	-0.204	-0.207
특별소비세	-0.117	-0.122	-0.121	-0.111	-0.111	-0.110	-0.111	-0.114

資料: KHPs 원데이프(1994).

작으면 역진적이라는 의미가 된다. A그룹에 속하는 귀착가정하에서 구한 K지수는 -0.008에서 0.007에 이르는 범위에 분포되어 있어 현행의 조세제도가 미미하게 누진적이거나 거의 比例稅에 가까운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반면 B그룹에 속하는 귀착가정하에서 구한 K지수의 값은 -0.038에서 -0.034의 범위에 분포되어 있어 조세부담 분배의 역진적인 성격을 시사하고 있다. C그룹에 속한 귀착가정하에서 구한 K지도 -0.061에서 -0.022 사이의 값을 가져 현행 조세제도의 역진적인 성격을 시사하고 있다.

각 조세별로 보면 間接稅는 K지수가 -0.210~-0.195로 구해져 매우 강한 역진적 성격을 드러낸다. 直接稅의 경우에는 이 지수의 값이 0.089에서 0.164 사이라는 넓은 구역에 분포되어 있어 어떤 歸着假定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누진도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처럼 귀착가정에 따라 직접세의 누진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주로 법인세와 부동산관련세에 대한 귀착가정의 차이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세의

경우에는 실제로 조세의 부담이 어떻게 귀착되고 있느냐에 따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달라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6. 맷 음 말

지금까지의 논의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의 租稅制度가 갖는 再分配效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현행 조세제도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분배상태를 개선하는 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間接稅는 역진적인 성격이 특히 두드러져, 조세부과 후의 실질소득 격차를 부과 전보다 오히려 더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간접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한 면세기능이나, 특별소비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이 공업제품의 대중적 소비현상, 저소득층에서의 소비수준 상승현상 등으로 인하여 거의 무력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뿐 아니라 社會保障制度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사회보험 분담금도 현행 조세제도의 역진성을 더 크게 만드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소득재분배효과가 비교적 를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는 直接稅의 경우 고소득층의 광범한 脱稅로 인해 실제의 누진성은 지극히 미미한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財產稅 등 부동산관련세의 부담분포는 어떤 귀착가정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상당히 달라지게 된다. 그렇지만 재산세의 부담분포가 전반적인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효과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현행 조세제도하의 부담분포는 소득수준이 오름에 따라 負擔比率이 점차 낮아지다가 수평선에 가까운 모양으로 정착되는 L字形構造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정도의 역진성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U자형구조보다 한층 더 심각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본 연구의 결과와 기존 연구의 결과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큰 차이는 어디에 기인하는 것일까? 80년대에서 9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조세제도 전반의 역진성을 강화시킬 제도상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아 이 해석이 들어맞을 가능성은 지극히 회박한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층의 脱稅 가능성을 고려에 넣는지의 여부나 間接稅 부담귀착의 처리방법상의 차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본 연구의 결과가 맞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나라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효과에 대해 근거없는 樂觀的 見解를 갖고 있었던 셈이다. 구체적인 방법론상으로는 본 연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지만, 조세의 부담분포를 측정할 때 탈세의 가능성

을 고려에 넣어야 한다는 방향 그 자체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나라처럼 地下經濟가 광범하게 퍼져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이 점을 인식하면서도 자료상의 제약으로 인해 선뜻 손대기가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소득계층별의 탈세규모를 대략이나마 추정할 수 있게 해주는 통계자료의 등장은 무척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탈세의 규모를 추정한 後續研究에 의해 우리 나라의 조세제도가 갖는 소득재분배효과가 한층 더 분명하게 밝혀지리라고 기대한다.

서울大學校 經濟學部 教授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전화: (02)880-6377

팩시: (02)888-4454

起亞經濟研究所 先任研究員

135-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8

전화: (02)519-6213

팩시: (02)544-9203/4

參 考 文 獻

국세청(1993): 『국세통계연보』.

나성린·현진권(1993a): “한국의 조세 및 사회부조 모형 2: 모집단화 적용을 통한 조세-사회부조의 소득분배효과,” 한국재정학회, 『재정논집』 7.

_____(1993b): 『조세 및 사회부조정책의 효과분석』, 한국조세연구원.

내무부(각년도): 『도시연감』.

_____(1993): 『지방세정연감』.

노기성(1992): “사업소득세 과소보고규모의 추계,” 『한국개발연구』, 겨울호.

농수산부(각년도): 『농가경제조사』.

대우경제연구소(1994): 『한국 가구 경제활동 연구』, 대우경제연구소.

보건사회부(1993): 『보건사회통계연보』.

- 성명재(1993): 『소비세 부담분포와 고세율 상품시장의 정상화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심상달(1988): “재정지출의 수혜분포분석,” 곽태원·이계식 편,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한국개발연구원.
- 안국신(1995): “우리 나라 소득계층별 소득분배의 추이,” 『경제연구』 2, 서울사회경제연구소.
- 유일호(1994): “우리 나라 탈세규모 추정: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한국개발연구』, 봄호.
- 이계식·배준호(1986): “우리 나라 간접세 부담분포,” 곽태원·이계식(편), 『조세정책과 조세발전』, 한국개발연구원.
- 이성욱·한상국·최병근(1993): 『토지세제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 이성욱·현진권(1993): “토지과표 고시지가 전환에 따른 토지관련 지방세제 개편방향,” 조세연구원.
- 이재은(1984): “한국재정과 소득재분배,”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정우(1991): “한국의 부, 자본이득과 소득불평등,” 『경제논집』,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최광(1987): 『한국의 지하경제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총서 42.
- 통계청(1993): 『도시가계연보』.
- _____ (1992): 『인구주택총조사』.
- 한국은행(1987): 『우리나라의 자금순환』.
- _____ (1993): 『도시가계저축시장조사』.
- _____ (1994): 『국민계정』.
- 한승수(1982): 『조세부담의 측정과 적정부담률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 日本經濟企劃廳(1990): 『國民生活白書』.
- 石弘光(1979): 『租稅政策の效果』, 東洋經濟新報社.
- 林宏昭(1995): 『租稅政策の計量分析』, 日本評論社.
- 林宣嗣(1987): 『現代財政の再分配構造』, 關西學院大學校, 經濟學研究叢書 22.
- Bahl, Roy, Chuck Kyo Kim, and Chong Kee Park (1986): *Studies in the Moderniz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1945~1975*, Harvard University.
- Bishop, John et al. (1994):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Non-compliance and Tax Evasion in the US,” in Creedy, J. (ed.), *Taxation, Poverty and Income Distribution*, Aldershot, Edward

- Elgar.
- Clotfelter, Charles, T. (1983): "Tax Evasion and Tax Rat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5**, 3.
- Heller, P.S. (1981): "Testing the Impact of Value-Added and Global Income Tax Reforms on Korean Tax Incidence in 1976: An Input-Output and Sensitivity Analysis," *IMF Staff Papers*, **28**, 375-410.
- Leipziger, D. et al. (1992):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in Korea*,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Kakwani, N. (1980):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Oxford.
- Kiefer, D.W. (1984): "Distributional Tax Progressivity Indexes," *National Tax Journal*, **37**.
- Pechman, J. (1985): *Who Paid the Taxes, 1965~1985?*,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 Pechman, J., and B. Okner (1974): *Who Bears the Tax Burden?*,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 Wolff, E.N. (1987): "Estimate of Household Wealth Inequality in the U.S., 1962~1983,"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4**.